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신설 등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8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신설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6.
3. 회 부 일 :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합당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수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
은 거의 없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
의 체계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을 신설하고,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며,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신설 등(안 제2조제1호 등)

개정안은 「정당법」에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당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2. “당원”이란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제3조의2(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 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②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 (생략)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1. (생략) ③ · ④ (생략) <u><신설></u>	<u>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u> ③ <u>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u> 5. ~ 11.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u>제36조의3(당원의 교육) 정당은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조직·활동, 당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 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당은 이 법 시행 이후 90일 이내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당헌에 규정하여야 한다.
---	---

현행법상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

하고, 등록 시 5 이상의 시·도당 및 시·도당별 1천인 이상의 당원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도록 하면서,¹⁾ 정당의 조직 및 구성,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정당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당의 당헌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²⁾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인 당원에 대해서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수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당법」에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당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당 당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정당법」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2) 「정당법」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다만, 당헌으로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당원 교육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정당활동의 자유³⁾⁴⁾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각 정당의 당헌·당규가 아니라 정당법에 규정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정당법도 당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3)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4)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이하 이를 포괄하여 ‘정당조직의 자유’라 한다)를 포함한다. 정당조직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개념적으로 포괄될 뿐만 아니라, 정당조직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한다.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시 금지될 수 있거나 정당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판례집 11-2, 800, 812; 1996. 3. 28. 96헌마9등, 판례집 8-1, 289, 304; 2001. 10. 25. 2000헌마193, 판례집 13-2, 526, 537 참조).